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0

발의연월일 : 2020. 11. 06.

발 의 자:권영세·김기현·김용판

최승재 • 태영호 • 이태규

최연숙 • 한무경 • 윤창현

성일종 • 허은아 • 김성원

이명수 · 배현진 · 정찬민

조수진 • 최춘식 • 박대출

윤희숙 · 김은혜 · 김도읍

김 웅 의원(22인)

제안이유

2017년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금액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향후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가발생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초과세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 3억 이상 6억 이하 구간, 6억 초과구간 모두에서 재산세 상한액 과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함(안 제111조 제3항)
-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 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로 인하(안 제112조제1항제 2호).
- 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을 특별한 재정수요 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함(안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항 본문 중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가감할 수 있다"를 "가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4"를 "1천분의 1.2"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재정수요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세율) ①・② (생 략)	제111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	③
한 재정수요나 <u>재해</u> 등의 발생	<u></u> 「재난 및 안전관
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	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u> 따른 감염병</u>
범위에서 <u>가감할 수 있다</u> . 다	<u>가감하여야 한다</u>
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만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	
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	
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	
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	
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생략)
-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 세표준에 <u>1천분의 1.4</u>를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

 분의 2.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1. (현행과 같음) 2. ------<u>1천분의 1.2</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재 정수요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재 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조정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제2호의 세율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 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